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립제주호국원('21. 12월말 개원 예정)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국립공원 내 위치하여 자연 지형을 최대한 살려 친환경적으로 조성된 국립묘지로서 묘역의 묘비를 자연 경관과 조화된 형태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. 따라서 제주의 자연 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와비 형태의 묘비 규격 및 제작 방법 등을 별도로 신설하는 한편, 안장 유골함 제작 방법 상 사문화된 용어를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생략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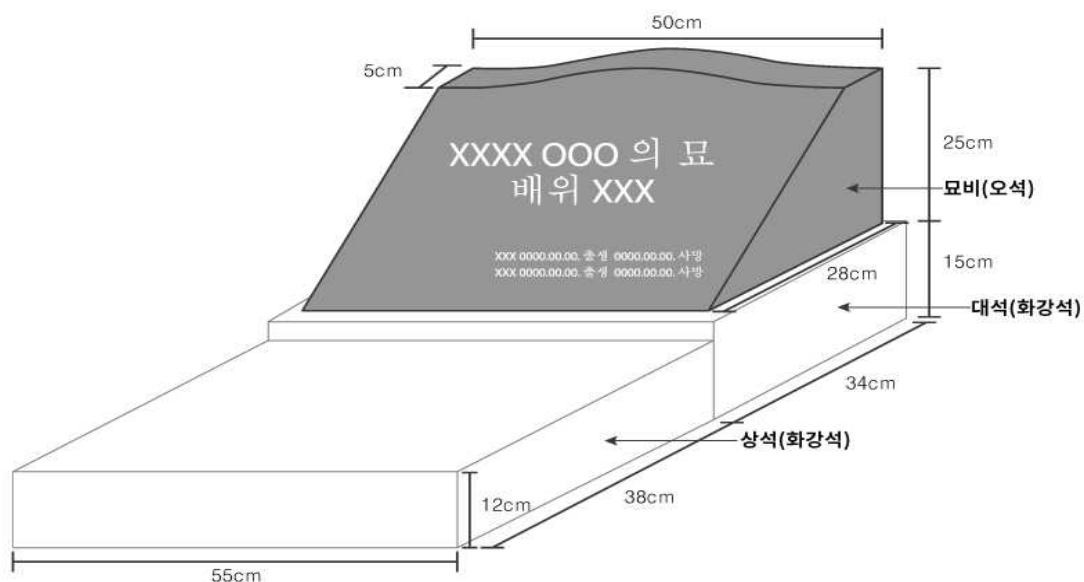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제3호가목1) 및 2) 외의 부분 중 “(제5호)”를 “(제5호 및 제6호의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되는 국립묘지에 설치하는 묘)”로 하고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법 제3조제1항제6호의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되는 국립묘지에
설치하는 묘

1) 묘비의 규격 및 재질



2) 묘비의 기재내용 및 기재방법

- 가) 앞면 : 안장자의 신분(계급)과 성명을 새기고,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안장자의 비문 아래쪽에“배위 ○○○” 또는 “부군 ○○○” 라고 새기고, 아랫부분에 안장자와 배우자(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의 출생일과 사망일을 새긴다.
- 나) 뒷면 : 윗부분에 안장자의 공적사항을 가로로 세 줄 이내로 새기고, 아랫부분에 안장자의 가족사항을 새긴다.
- 다) 오른쪽 옆면 : 아랫부분에 묘지번호를 새긴다.
- 라) 글씨색은 흰색으로 한다.

별표 5 제1호가목 중 “청색 무궁화를”를 “무궁화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551